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1. 12. ,

제 출 자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를 연장함과 동시에,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갈 경우 휴가자에게 업무 공백등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어서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로 함은 **아니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개정안 제23조 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간 동안 행정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자를 고용계약하여 충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를

⇒충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로 함.

3. 참고사항

- 행자부 운영12000-800 (2001. 9. 26)
- 경상북도 총무1 2100-11861 (2001. 10. 19)
- 전북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2000. 6. 15)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3조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조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간 동안 행정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자를 고용계약하여 충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담당, 주무급이상의 자는 제외)” 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생략)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u>< 신 설 ></u> ③~⑩ (생략)	제23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 ②----- -----90일의 -----, <u>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u> <u>고는 20일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u> <u>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간</u> <u>동안 행정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u> <u>있는 자를 고용계약하여 충원하는</u> <u>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u> <u>(담당, 주무급이상의 자는 제외)</u> ③~⑩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개정안과 같음) ②----- -----90일의 -----, <u>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u> <u>고는 20일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u> <u>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간</u> <u>동안 행정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u> <u>있는 자를 고용계약하여 충원하는</u> <u>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u>(담당, 주무급이상의 자는 제외)</u> ③~⑩ (개정안과 같음)